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 12. 이 선 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03. 12. 11

다. 상 정 일 자 : 2003. 12. 11

(제119회 화순군 의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장 이 선

나. 제안사유

○ 화순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전을 위해 지난 제117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시 의안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코자 함.

다. 주요내용

○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 할 수 있다.(안 제3조)

○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안 제5조제1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임근성)

○ 동조례 제3조 자치단체의 의무에 있어서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는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 실천을 각각 학교장이 함이 타당 할 것이며 제5조의 급식비 지원 내용중 우수 농산물 사용의 지도·감독 사항은 동조례 제9조에 지도·감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①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 관련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정비중 일부를 제정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 생 략 -.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 (현행과 같음)